##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47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김문수・이수진・이광희

민형배 · 고민정 · 허성무

김우영 • 주철현 • 박지원

오세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 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 <u>치</u>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u>치</u>
<u>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u> 한의	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
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u>원은</u>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